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문제 1】 2024. 1. 15. 가맹본부 甲은 가맹점사업자 乙과 X상품의 공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50점)

> 제4조(가맹점운영 불가능에 따른 계약해지)
>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하여 가맹점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甲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乙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 제6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甲 또는 乙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금 1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본다.

※ 아래 물음 1), 물음 2)는 별개의 독립된 문제임

물음 1) 甲이 乙에게 물량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위 계약 제4조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자, 乙은 甲의 계약해지 통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甲은 乙이 위 계약 제4조에 동의하였으므로 계약해지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2) 乙은 甲의 위 가맹계약상의 내용위반을 이유로 甲을 상대로 실손해액인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甲은 위 계약 제6조에 근거하여 乙이 손해배상예정액인 1억 원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발생에 있어 乙의 과실이 기여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과실상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甲의 각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乙의 실손해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이 손해발생에 있어 乙의 과실 20%가 인정되며, 이 계약 제6조의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지 않음) (30점)

【문제 2】 가맹본부 甲은 가맹점사업자 乙과 2022. 4. 1.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乙이 2023. 5. 6.부터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甲은 이를 이유로 2023. 8. 1. 乙에 대한 물품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앞으로 乙과의 가맹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乙은 甲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최고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乙의 가맹계약해지의 적법성 및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문제 3】 가맹본부 甲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乙이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위 가맹계약의 체결과정에서 甲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제공한 정보 중 예상매출액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乙은 가맹점 개설 이래로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지출비용 만큼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甲의 정보제공행위의 적법성과 乙의 영업손실에 관한 甲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